

제2682호
2019. 9. 2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9-11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제2019-11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 공 고

- 제2019-711호 : 공시송달 공고 4
- 제2019-712호 : 서울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예장동 1-147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6	2019. 9. 25.	필동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필동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3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6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147	2019. 9.25.	건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주소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처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9. 25. ~ 10. 10. (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사·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02-3396-5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조서 ○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현황	통보 대상자	통보대상자 주소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4	201	김*금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4
		101, 102		
		B101, B102		
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0길 29	201	방*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0길 29
		101		
		B101		
3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0길 31-1	201	최*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0길 31-1
		101		
		B101		
4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0길 27-5	201	박*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0길 27-5
		101		
		B101		
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5길 40	301	최*혁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5길 40
		201, 202		
		101, 102		
		B101, B102		
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76-8	301, 302	적**량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76-8
		201, 202		

		101, 102		
		B101, B102		
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8길 35	201 101 B101	김*훈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8길 35
8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8길 27-1	301 201 101	김*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4, *동 ***호
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2길 37	301 201 101 B101	신*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2길 37
1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가길 7-4	201 101 B101, B102	이*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가길 7-4
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가길 22-1	201 101 B101	이*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6가길 22-1
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4길 32	301 201 101	박*구 김*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4길 32
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4길 39	201 101	류*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4길 39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가길 6-1	201, 202 101	최*희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가길 6-1
1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2	201 101 B101	권*재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2
1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0	301 201 101 B101	박*식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0
17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1	201 101 B101	전*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11
18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	301, 302 201, 202 101 B101, B102	김*환 김*희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
1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6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정*석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6
2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8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이*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동 *호
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4-7	301 201, 202 101, 102 B101, B102	유*선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4-7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현황	통보 대상자	통보대상자 주소
2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8-21	301, 302, 303	김*환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 *동 *호
		201, 202, 203		
		101, 102, 103		
		B101, B102, B103		
23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41	201	황*희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41
		101, 102		
		B101		
2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4-23	401	최*인 이*용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4길 24-23
		301, 302		
		201, 202		
		B101		
2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3-5	301	김*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3-5
		201, 202		
		B101, B102		
2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31	301	임*남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31
		201, 202		
		101, 102		
		B101		
27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38	301	이*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38
		201		
		101		
		B101, B102		
28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3-10	201	김*례 고*명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3-10
		101		
2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45-8	301	백*화 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84-9, *호
		201, 202		
		101, 102		
3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0길 19	201, 202	김*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1길 10
		101		
3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38	401	최*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38
		301, 302		
		201, 202, 203		
		101, 102, 103		
		B101, B102		
3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21-12	401, 402	이*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월로14길 42, *동 *호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33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7	101, 102	최*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7, *호
		301		
		201, 202, 203		
		101, 102, 10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12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이 다양화되어 이에 따라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일부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2호 별표 5)
 -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규격 추가, 수수료 일부 상향
 -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교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3396-5453, 팩스 : 3396-8754, email : (coldho7@junggu.seoul.kr,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1	가방류	가로 50cm 이상	3,000
		가로 50cm 미만	2,000
2	가스레인지 받침	모든 규격	2,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4	간판(칠판)	40cm×100cm 이상	6,000
		40cm×100cm 미만	3,000
5	거울	높이 50cm 이상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6	건조대	전체	2,000
7	고무통	지름 100cm 이상	5,000
		지름 50cm 이상	3,000
		지름 50cm 미만	2,000
8	공기청정기	대형(사업장용)	5,000
9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10	금고	1m 이상	10,000
		1m 미만	7,000
11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	5,000
		130ℓ 미만	3,000
12	김칫독	용기 제품 제외	5,000
13	깨진 유리	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2,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3,000
14	나무 묶음	직경 40cm	2,000
15	나무판자	개당(2m 이하)	1,000
16	난로	모든규격	3,000
17	냉장고	업소용	15,000
		500 ℓ 이상	10,000
		300 ℓ 이상	7,000
		300 ℓ 미만	4,000
18	다리미 판	모든 규격	1,000
19	돛자리, 장판	3.3㎡당	1,000
20	런닝머신	모든 규격	18,000
21	마네킹	전체	3,000
22	목욕탕수건함	모든 규격	1,000
23	문갑	모든 규격	3,000
24	문짚	개당	2,000
25	물탱크(저수조) <FRP 또는 플라스틱>	15인승 이상	12,000
		15인승 미만	7,000
26	밥상	5인용 이상	4,000
		4인용	2,000
		3인 이하	1,000
27	배기 후드	모든 규격	2,000
28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양변기	10,000
29	병풍	2폭당	1,000
30	보일러	16,000cal/h 이상	12,000
		16,000cal/h 미만	8,000
31	보일러 기름 탱크	모든 규격	2,000
3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33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34	분말 소화기	가정용 10kg 미만	3,000
35	비키니(간이)옷장	모든 규격	3,000
36	서랍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37	선풍기	날개 50cm 이상, 영업용	4,000
38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39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4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41	소파	4인용 이상	10,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3,000
42	스피커	개당	1,000
43	식기 건조기	모든 규격	2,000
44	식기 세척기	모든 규격	5,000
45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5인용 이하	4,000
		4인용 이하	3,000
46	신발장	높이 120cm 이상	3,000
		높이 120cm 미만	3,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47	쌀통	모든 규격	3,000
48	쓰레기통	사무실·옥외용	2,000
		가정용	1,000
49	싱크대	60cm 1개당	3,000
50	아기 침대	모든 규격	4,000
51	액자	대형(넓이 5㎡ 이상)	2,000
		소형(넓이 5㎡ 미만)	1,000
52	어항	1m 이상	6,000
		1m 미만	4,000
53	에어컨	25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54	오디오	대형	5,000
55	오디오 장식장	모든 규격	3,000
56	자석 매트	모든 규격	2,000
57	온풍기	25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58	오락기	대형(업소용)	8,000
59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61	욕조	모든 규격	7,000
62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3	유아용 목마	모든 규격	1,000
64	유아용 자동차	모든 규격	2,000
65	의자	일반 의자(4인용 이상)	5,000
		일반 의자(3인용)	4,000
		일반 의자(2인용)	3,000
		일반 의자(1인용)	2,000
66	이불(요, 담요)	1채당	2,000
67	인형, 장난감 류	개당	1,000
68	자동판매기	대형(음료·커피·담배)	15,000
		소형	5,000
69	자전거	성인용	5,000
		아동용 이륜	4,000
		유아용 삼륜	3,000
7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71	재봉틀대	모든 규격	6,000
72	장롱	30cm당	3,000
73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74	전기장판(담요)	모든 규격	2,000
75	전자 오르간(디지털 피아노)	모든 규격	4,000
76	정수기	20ℓ 이상	5,000
77	진열대	모든 규격	3,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78	찬장	1칸	3,000
79	책꽂이(책장)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3,000
		2단 이하	2,000
		90cm×180cm 이상	10,000
		90cm×180cm 미만	6,000
80	책상	양수	7,000
		편수	4,000
		컴퓨터 또는 서랍없는 책상	3,000
81	가림막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82	청소기	핸디형(로봇 청소기 제외)	4,000
83	침대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만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만	5,000
84	카펫	3.3㎡당	2,000
85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86	탁자	10인 이상	8,000
		3인 이상	5,000
		2인 이하	3,000
		차 탁자	2,000
87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42인치 미만	3,000
88	텔레비전 받침	모든 규격	3,000
89	파티션	1칸당	2,000
90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91	항아리	옹기 제품	2,000
92	헬스 기구	5kg 이상	6,000
		5kg 이하	4,000
93	헬스 자전거	모든 규격	4,000
94	화분	대형(직경 50cm 이상)	2,000
		소형(직경 50cm 미만)	1,000
95	파일 캐비닛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96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97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98	히터	모든 규격	2,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